■ 수산업협동조합법 [별표] <개정 2015.2.3.>

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

(제53조의2제3항 관련)

관련 조항	구분	통상적인 범위	의례적인 선물의 범위
제53조의2제2항 제2호나목	○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하는 축의·부의금품	○ 5만원 이내	
제53조의2제2항 제2호다목	○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	○ 3만원 이내	
	○ 관혼상제 의식 또는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	○ 1만원 이내	
제53조의2제2항 제2호라목	○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		○ 3만원 이내